아르헨티나 연방수산업법
(Federal Fisheries Law, 법 제 25,922호)

1997. 12. 9 승인
1998. 1. 6 발효
1998. 1.12 관보게재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아르헨티나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활동을 권장한다. 수산업과 관련한 국가이익의 효과적인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성 유지, 자원의 장기적인 보존, 친 환경적인 가공산업 개발, 부가가치 창출 촉진, 가능한 많은 아르헨티나 노동인력의 고용을 촉진한다.

제 2 조 해양생물자원의 조업 및 가공은 산업활동으로 간주되며, 동 법에 의해 설치되는 연방해양수산제도에 의해 규제된다.

제 2 장 통치 및 관할범위

제 3 조 기존의 연방법에 의하여 측정되고 설정된 연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연근해 및 내수면에서 발견된 생물자원은 연안주에 속하며, 동 연안주는 발견된 자원에 대한 이용,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 4 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발견된 생물자원 및 전 조에서 언급한 12해리 밖에서 발견된 생물자원은 연방정부의 통치 및 관할에 속한다. 연안국으로서의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경계왕래 어종과 고도회유성 어종 및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서식하는 어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적용범위

제 5 조 동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의 관한 해역내에서의 수산업 규제
2. 연방 및 주정부 관할지역에서 발견되는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정
3. 제3조에서 언급된 해역에서의 조업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특정 어종이나 자원의 보존을 위해 국가이익에 위협이 있다는 선언이 있을 때는 언제나 취할 수 있는 당국, 국가이익에 위협이 있다는 선언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발효 30일 이전에 연방수산위원회의 검토와 비준이 있어야 함.
4. 경계왕래어종이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해역에서의 조업규제.

제 4 장 적용 당국

제 6 조 본 조항은 행정부에 의해 비토 되었음.(*아르헨티나 경제부 산하에 수산차관을 두어 동 법의 적용당국으로 한다. 동 법에 따른 수산부분 해당기관의 업무 규범은 국가 행정부에서 관할한다)

제 7 조 적용당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수산정책의 집행, 이용개발업무, 조사업무, 연구업무
2.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연구와 관련된 목표, 조건 등의 설정 및 집행
3. 연방수산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의 준수 여부 조사, 연방수산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선박별 어종별 조업구역 및 선박형태에 따른 어획쿼타 결정
4.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승인으로 조업허가 발급
5.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승인으로 어장별 계절별 어획 가능량의 산정 및 조업제한 조치
6.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승인으로 선박별 및 수산회사별 조업활동에 대한 필요사항 및 조건을 설정
7. 연방수산위원회가 정한 수산정책과 INIDEP(국립수산연구원)의 자문에

의하여 허용되는 조업방법 및 기술의 설정, 금지되는 조업장비 및 기술의 설정
8. 동 규정에서 정하는 벌금의 부과, 위반사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위반사례는 연방수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9. 조업활동에 대한 통계체계 개발
10. 국가수산정책 지침에 따라서 수산업에 관한 양자 및 다자국제협상에 참여
11.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어업등기구의 업무규정의 정립
12. 연방수산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입어료 징수
13. 수산정책 진흥을 위해 주어지는 혜택 승인에 참여
14. 연방수산위원회와 함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에서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주어지는 투자프로젝트에 참여
15.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승인에 하에 시험조업 허가 발급
16. 아르헨티나 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어획량, 허가된 어황에서의 하역량, 어회신고에 대한 진실성 등의 결정, 통제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통제제도의 설립 및 이행
17. 국내시장에서의 수산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아르헨티나 수산제품의 해외 판매 촉진을 위한 단체의 조직
18. 기타 동 법에서 적용당국에 부여한 모든 권한의 행사

제 5 장 연방수산위원회

(Federal Fisheries Council, Consejo Federal Pesquero)

제 8 조 연방수산위원회가 설립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해안을 가진 연안 각 주에서 대표자 1명
2. 수산차관
3. 천연자원 및 지속개발부의 대표자 1명
4. 외교통상부의 대표자 1명
5.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대표자 2명

수산차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의결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 9 조 연방수산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수산정책의 수립
2. 수산연구정책의 수립
3. INIDEP(국립수산연구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어종별 최대 지속 어획가능량을 고려하여 어종별 총허용어획량을 산정. 또한 선박별, 어종별, 어장별, 선단의 종류별로 어획쿼타를 정함.
4. 상업용 및 시험용 조업 면허의 승인
5. 국제협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적용당국에 대한 자문
6. 국가 수산분야 개발에 대한 지침 설정
7. 연방수산기금의 배분 기준 설정
8. 시험조업 기준 설정
9. 어업면허 및 입어료 결정
10. 본 법 제45조 제5항에 의거 설치된 연방수산기금의 배분비율 조정
11. 생계조업활동을 규제하며 생계조업을 위한 어종의 보존 쿼타 설정
12. 과반수 표결로 정해지는 연방수산위원회의 안건 선정
13. 구성원의 3분의 2표결로 승인되는 자체 운영규정 제정

제 10 조 연방수산위원회의 산하에 수산분야 업계 및 노동자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명예 자문위원회를 두며, 본 자문위원회의 운영기준은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연구

제 11 조 연방수산위원회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책, 목적 및 과학적 기술적 연구에 대한 조건을 정한다. 이러한 과학적 기술적 활동의 계획 및 집행기관은 국립수산진흥원(INIDEP)이며 국립수산진흥원은 지방 주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며 특히 해양생물 자원의 평가 및 보존에 그러하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연방 및 주 정부와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활동에 협력한다.

제 12 조 국립수산진흥원은 연방정부 소유의 어업연구선을 운영한다. 이는 수산물의 최대 지속적 생산량을 평가하기 위해 합의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13 조 수산자원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거나 공표되기 전에 적용당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다로부터 생물을 획득하는 회사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국적선 또는 외국적선을 가진 내·외국 개인 또는 회사, 다국적 기관의 시험조업은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적용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 당국은 과학적 기술적 연구결과로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시험조업에 관한 조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시인으로 국립수산진흥원(INIDEP)의 대리인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제 15 조 시험조업은 과학적 기술적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험조업선 운영자는 적용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획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적용당국은 국립수산진흥원(INIDEP)의 조언에 따라 그리고 이행될 과학적 기술적 연구목적에 따라, 어획 시기 및 어획 쿼타를 정한다.

제 16 조 국립수산진흥원(INIDEP), 국립연구위원회(CONICET) 및/또는 국립대학의 시험조업에 의한 어획물의 처리는 적용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보호 및 관리

제 17 조 아르헨티나 관할 해역에서의 조업은, 과잉어획을 방지하여 자원을 보전하며, 건전한 환경 및 생태학적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수산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연방수산위원회는 본 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종별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한다.

제 19 조 본 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적용당국은 조업금지 지역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설치와 해제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면허소지자 및 감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수산물 보존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면허소지자들에게 어획물, 조업능력, 조업

위치에 대한 통계정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관계 당국은 연방수산업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당국과 협조 하에 아르헨티나 해역에서의 어선의 운영,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조사와 통제를 적절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용당국은 조사와 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취득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적용당국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업방법, 기술, 장비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아르헨티나 관할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종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는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모든 종류의 폭발물 사용
2. 어획방법으로 음향기구나 유독물질 사용
3, 선박에 금지된 어구의 운송이나 사용
4. 선박에 폭발물이나 독극물의 운송
5. 수중 동식물에 해가 되거나 왕래 어종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질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수중 동식물의 보존에 해가 되는 함정, 기구 또는 절차를 이용하여 어획하는 행위
7. 해양생물을 위해, 남획, 고갈시킬 수 있는 모든 조업행위
8. 조업허가나 쿼타없이 또는 현행법령에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9. 조업금지 해역 및 시기에 조업하는 행위
10.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외래종의 동식물을 투입하는 행위
11. 어족자원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을 투입하는 행위
12. 선박의 형태, 조업어종 및 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트롤그물 사용
13. 책임 있는 수산 활동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4. 규정이하 크기의 어종을 어획하거나 어획량 및 어종의 허위신고
15. 어획쿼타를 초과하여 어획하는 행위
16. 연방수산위원회와 합의하여 적용당국이 설정한 어족자원의 지속성에 해가 되는 행위 및 책임 있는 수산업 원칙에 반하는 행위

제 22 조 연안국가로서의 우선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무성과 함께 적용당국은 아르헨티나 EEZ인근해역에서, EEZ해역에 속하는 어종과 동일한 어종 및 같은 어군에 속하는 어종, 경계왕래 어종의 조업을 규

율하는 제도를 조직 유지한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EEZ인근해역을 이용하기 원하는 국가들과 동 해역의 자원 보전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떤 조업제한이나 금지의 효과는 제3당사자와 서명한 협정에도 적용된다.

제 8 장 수산 제도

제 23 조 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적용당국이 부여하는 다음 중 하나의 행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조업허가 :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상업적 수산활동을 위해 아르헨티나 국적선박에 주어지는 허가
2. 원양어업허가 : 대륙붕, EEZ 외해, 원양 또는 제3국의 면허를 가진 아르헨티나 국적선박에 상업적 수산활동을 허가하는 제도
3. 한시적 조업허가 : 법에 정하는 조건 및 기준에 따라 나용임차선박에 주어짐. 동 법이 예외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선박에도 주어질 수 있음.
4. 조업인가 : 과학적 기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정된 양의 해양생물자원 어획에 주어짐.

제 24 조 아르헨티나 관할 해역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은 아르헨티나 법률을 준수하는, 아르헨티나에 법적 주소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아르헨티나에 등록되어야 하며, 아르헨티나 국적선이어야 한다.

제 25 조 어선의 생산물은 아르헨티나 항구에 하역되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국제수역에서의 조업허가를 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적용 당국이 외국항에서의 하역이나 아르헨티나 항구에서의 환적 또는 그들의 특별 시설내에서의 특별하역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6 조 조업허가는 본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어진다.

1. 허가기간은 특정 선박에 10년까지 주어진다.

   연방수산위원회는 선박의 필요조건을 정하며, 다음 사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가. 아르헨티나 노동력을 많이 고용하는 선박

나. 아르헨티나에서 건조된 선박

다. 신조(선령이 적은) 선박

2. 아르헨티나 국경내에서 가공시설을 갖춘 회사가 소유한 특정선박에는 허가기간을 30년까지 할 수 있다. 동 가공시설은 수산생산품을 지속적으로 처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수산위원회는 선박의 필요조건을 정하며, 다음 사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가. 선박이나 육지에서 아르헨티나 노동력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

나. 최종산품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회사

다. 아르헨티나에서 건조된 선박

라. 신조(선령이 낮은) 선박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선박 소유자는 법적 의무사항, 연근 및 세금납부를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제 27 조 본 법의 시행일로부터 기존의 허가 및 앞으로 허가 받을 각각의 조업허가에 대하여 어획쿼타가 주어진다. 연방수산위원회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종별, 선박별, 어업별, 선단별 특별어획쿼타에 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규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획쿼타는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회사나 기업은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수산위원회가 정한 쿼타 이상을 가질 수 없다.

쿼타 배정 및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연방수산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권을 준다.

1. 노동력 고용량
2. 국내 투자액
3.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8년간 선박별(여러 선박이 같은 회사 및 기업에 속한 경우에는 선단별) 어종별 합법적 평균 어획 톤 수
4.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8년간 선박별(여러 선박이 같은 회사 및 기업에 속한 경우에는 선단별) 어종별 선상 또는 육상 수산생산품 평균 가공 톤 수
5. 법률 및 수산당국의 규정 지침의 위반사례 부재

어획쿼타는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연방수산위원회는 허가한 쿼타에서의 어획량 및 어종의 가치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될 양도금액을 정한다.
냉장트롤선의 쿼타를 냉동트롤 또는 공모선에 양도할 수 없다.
연방수산위원회는 특정 어종의 보존과 관리 수단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관련성에 따라 이를 특정분야에 배정할 수 있다.

제 28 조 조업허가는 조업에 참여하는 선박에 한하여 주어진다. 조업선박은 배정된 어획쿼타가 필요하며 어획쿼타가 없는 어종의 경우에는 특별인가가 있어야 한다.
회사나 기업에 주어진 조업허가나 인가는, 그 회사나 기업이 파산선고 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동안 운영이 경우에는 연방수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한다.
침몰되었거나 선박운영이 불가능한 사고를 당하여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한 마감시한까지 대체되지 아니한 선박에 주어진 조업허가나 인가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 29 조 아르헨티나 관할 해양에서의 수산생물자원의 조업을 위하여는 어종별 조업기술별로 단순조업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본 조업료는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0 조 선박의 사고로 선박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업면허는 적용당국의 사전 승인에 의해 비슷한 능력의 선박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이에는 어획노력의 증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어떤 수산생산품도 위생관계당국의 사전 통제가 있기 전에는 만들어 질 수 없다. 본 통제는 규정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적용당국은 수산생산품의 이동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규제한다.

제 32 조 유효한 조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 면허소지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방법과 시간에 맞추어 어획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신고는 본 법 제41조에 따라 제제를 받는다.

제 33 조 적용당국은 선박에 위성모니터링 장치의 설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본 장치를 완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위반은 본 법 제51조에 처벌된다.

제 34조 국가어선단에 새로운 선박의 등록에 관한 적용당국의 승인은, 정해진 시한 내에 취득, 건조, 수입이 된다는 조건으로 - 본 시한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 필요한 조업면허를 승인한 효과를 갖는다.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건조 및 수입은 조선소, 선주 또는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으로 한다.

제 9 장 국적선에 대한 예외

제 35 조 아르헨티나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본 장에서 특별히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르헨티나 국적선에 한하여 가능하다. 대륙(영해) 및 국토(내수면)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국적서의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5년 동안 수산업에서 범법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회사는 외국 나용선의 임차가 허용된다. 연방수산위원회의 사전 승인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연합으로 가능하며, 동 선박의 선령은 5년이 넘지 않고 임차기간은 3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임차의 목적은 이용(어획)되지 않았거나 과소이용(어획)된 어종의 잉여분을 어획하는데 있으며, 본 어획은 대상 어종의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쿼타의 배분은 제2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계약의 관련기록은 해안경비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 등기되어야 한다.
적용당국은 감독 및 조사의 의무를 가진다. 본 임차선박은 아르헨티나 선박에 적용되는 항해 및 선상고용에 관한 해양 및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어업협정

제 37 조 아르헨티나 국가는 국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국제조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 외국선박의 조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는 이용(어획)되지 않았거나 과소이용(어획)된 어종을 어획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조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르헨티나 수산생산물의 수입쿼타가 관세 없이 조약서명국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 개방. 동 쿼타는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할당된 어획쿼타와 비슷한 양이 되어야 하마.
2, 아르헨티나 EEZ 인접지역에서의 자원의 보전
3. 조약서명 당사국 EEZ 에서의 아르헨티나 선단의 조업권리

과잉어획 계산을 위한 아르헨티나 선단의 어획능력 결정에는 생태학적 구조를 근거로 하며, 일상적 감소나 조업능력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전 조에서 언급된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업쿼타 부여는 국적선박의 조업쿼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모든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한정된 기간 동안 주어짐.
2. 외국선박은 본 법의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아르헨티나 회사와 합작형태가 될 때에 한하여 승인됨.
3. 지리적으로 정해진 특정 해역 및 어업, 특정 어종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주어짐
4. 적용당국은 조업시기 및 해역, 조업장비의 형태・크기・수를 정하며, 선박의 척수・크기・형태에 대한 규정을 정함.
5. 적용당국은 어획될 해양생물의 연령과 크기를 정함.
6. 동 선박은 어획된 수산물의 환적, 이동, 재 선적 시에는 아르헨티나 부두에서 하역하여야 함.
7. 동 선박은 아르헨티나 선박에게 적용되는 모든 해양 및 노동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8.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생성된 회사는 본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생성되었음이 등록되어야 함. 또한 선박, 선원,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도 등록되어야 함.
9. 동 선박은 관계당국이 정한 조업료를 지불하여야 함.
10. 동 선박의 소유주는 각 선박에 승선하는 적용당국이 임명한 연구관 및 통제관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11. 동 선박들이 어획한 수산물은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속하는 국가의 시장에 국제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제3시장으로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함. 새로운 시장이나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출이 제한되는 시장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예외임.
12. 선박은 최소 50%의 아르헨티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13. 적용당국은 아르헨티나 합작사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음.
14.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된 수산생산품의 수출은 어떠한 진흥제도나 세금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제 10 장 선원

제 39 조 본 법의 목적에 따라, 모든 어선의 선원은 국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당국이 발급한 승선허가, 승선 면허 또는 자격, 또는 전문면허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여야 한다.

제 40 조 어선의 선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장 및 사관의 지위는 아르헨티나인 또는 아르헨티나 국적취득자로 함.
2. 선박의 준사관, 항해사, 갑판사의 75%는 아르헨티나인 이거나 외국인의 경우 최소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증명된 자로 하여야 함.
3. 아르헨티나 선원이 부족하여 외국인 선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적으로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음. 이 경우 아르헨티나 선원이 충족될 수 있으면 그들이 선박의 선원으로 충원됨.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어선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방수산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1 장 어업 등기국

제 41 조 어업등기국이 신설된다. 어업등기국은 적용당국에 의해 운영되며,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참여하는 모든 법적 물리적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2 조 본 법에 의한 어업등록의 미비, 정비, 취소가 적용당국에 의해 정해진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 당사자를 위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 12 장 어업 기금

제 43 조 특별 계정으로 어업기금이 신설되며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연간 조업면허료
2. 조업면허를 가진 국적선 선박의 어획에 부과되는 조업료
3.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나용임차선에 부과되는 연방수산위원회가 정산 조업료
4.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서 임시면허로서 조업하는 외국선박들에 부과하는 조업료
5. 본 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6. 본 법 제 53조 및 그 이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로부터 압수한 어획물, 장비, 선박의 판매금
7. 기부금 및 유물
8.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협정에 의해 발생되는 기타 수입금
9. 국가 세무국의 배당금
10. 서비스 수입금
11. 전 항에서 언급된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

제 44 조 어업기금은 적용당국이 연방수산위원회와 함께 관리하며 연방수산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정부 및 지방 연안주에 배정된다.

제 45 조 어업기금의 배정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1. 국립수산진흥원(INIDEP)의 연구비로 기금의 25%까지 배정
2. 기금의 20%까지 관계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조업활동에 대한 장비구입 및 감시, 경찰통제 비용
3. 기금의 1%까지 적용당국의 운영비, 2%까지 연방수산위원회 운영비
4. 기금의 2%까지 수산노동자들의 훈련비용. 동 배정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배정
5. 연방수산위원회는 최근의 경험과 앞으로의 수요에 따라 본 조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6. 동 기금의 50% 이상이 연방정부 및 연방수산위원회의 위원인 연안주에 수산세금의 형태로 전도되어야 함. 기금 배분의 기준은 연방수산위원회에서 정함.

제 13 장 법령 위반 및 처벌 제도

제 46 조 해양생물자원 및 그 산품 또는 부산품의 개발・어획・가공・무역・수송에 관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은 본 법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적용당국이 유지하는 등기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 목적에 따라 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적용당국으로부터의 면허가 확실한 허가를 소지하니 아니한 외국어선의 선상에서 발견된 수산생산품(아르헨티나 관할 수역 또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거래되는)은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어획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8 조 조업금지해역에 항해하는 아르헨티나 국적선 선상에서 발견된 수산생산품은 조업금지해역에서 어획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전에 동 금지해역에 대한 진입허가가 신고 되지 아니한 한 본 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제 49 조 아르헨티나 정부 관할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법률 규정 등 법령 위반은 본 법에 의한 적용당국이 정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르헨티나 관할수역에서 운영 중인 외국선박이 법령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발견된 때는 본 법에 의한 적용당국이 정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방관할 수역에서의 위반된 조업활동은 본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해당 적용당국이 정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 50 조 외국 선박에 대한 법령위반의 조사책임은 해안경비대가 진다. 해안경비대의 조사가 완결되면, 상응하는 처벌에 책임을 지는 적용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적용당국은 자신의 결정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 51 조 적용당국은 현행법령에 명시된 위법활동이 행해졌음이 조사 후 발견되면 언제나 다음 처벌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범버 선박에 부과한다. 처벌에는 선박의 특징, 범법행위의 심각성, 과거 범법기록을 고려한다.

1. 사소한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
2. 1만 페소에서 1백만 페소까지의 벌금
3. 적용당국의 등기에서 위반선박을 일시적(5일에서 1년까지)으로 등록 제외
4. 위 등기에서 등기의 영원한 말소
5. 어업 장비의 몰수
6. 불법적 수단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몰수
7. 선박의 몰수

불법조업 당사자가 면허・관련인가・개별쿼타가 없거나 조업금지수역에서 조업한 경우에는 벌금이 3만 페소 이상이어야 한다.

범법선박이 관련인가나 개별쿼타가 없는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벌금이 최소 10만 페소에서 최대 2백만 페소가 된다. 처벌에는 제53조에서 정한 조건이 적용되지만, 어획물의 몰수도 포함한다.

제 52 조 위법사실이 심각할 경우 적용당국은 선박소유자의 등기를 일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의 전 선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53 조 불법 어획물이 몰수되는 경우, 적용당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어획물이 항구에 도착하는 시점의 해당어획물의 시장가격에 준하는 금액의 현금납부로 몰수를 대신할 수 있다.

제 54 조 외국선박의 경우, 적용당국은 관련 조사 후 벌금의 납부나 예상되는 벌금을 커버할 수 있는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까지 선박을 아르헨티나 항구에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범법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예인선비용, 조사 또는 항구이용 비용, 세관 비용, 위생 및 출입국비용은 선박이 풀려나기 전에 선주 또는 대표자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본 법에서 정한 범법행위가 연방정부관할 수역에서 아르헨티나 국적선에 의하여 행해졌을 경우에는 관련 조사 후에 적용당국에 의해 처벌이 결정된다. 관련조사는 적용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 및 양식과” 또는 해양

경비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본 처벌이 형법이나 관세규정을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54 조의 2 “어업 및 양식과”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범법 당사자로 주장하여 고소할 경우에는 피고소자는 10 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본인의 권리를 변호하기 시작함.
2, 고소 사실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적용되는 처벌이 50%까지 삭감될 수 있음. 피고소자가 고소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마감시한이 종료됨. 그러나 조사를 위한 행정적 조치 전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처벌이 75%까지 삭감될 수 있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국은 범법당사자에게 본 목적을 위하여 적용당국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벌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음.

제 55 조 적용당국, “어업 및 양식과”, 또는 대리인은 범법사실이 행해졌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항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관련사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행정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56 조 관련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각한 위반이 행해졌다고 간주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당국, “어업 및 양식과”, 또는 대리인은 충분한 분석과 행정적 근거를 통하여 범법 당사자로 간주되는 선박의 등록을 적용당국의 등기기록에서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전정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나 임시 정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7 조 전 조에서 등기의 정지가 된 경우, 정기 기간 중 동 선박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적용당국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전정지가 이루어진 어항을 벗어날 수 없다.

제 58 조 범법행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심각성이나 그 특성에 관계없이 제 51조에 정한 종전의 최소 및 최대 처벌이 두 배가 된다. 반복되는 위반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박, 선박 소유자, 운박 운영자에 대한 기록이 차별 없이 고려된다.

제 59 조 적용당국이 처벌에 대하여 통보 후 5 근무일 이내에 행정적 항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적

용당국은 이의제기 접수 후 20 근무일 이내에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적 절차에서는 최종결정이 된다.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이 종전의 처벌을 확인하게 되면, 변호인측은 벌금 부과의 경우 상당금액을 맡기거나 법원 당국에 공채를 제공한 후에 “부에노스 아이래스시의 분쟁 및 행정사건 연방 항소부”에 항소를 할 수 있는 5 근무일을 가지게 된다. 항소를 결정할 경우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적용당국은 본 항소부에 조사기록을 항소제기 후 5 근무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0 조 모든 항소가 완료된 후 등기로부터 정지나 취소는 본 법 제46조에 규정한 활동이 모두 정지됨을 뜻한다. 처벌내용은 적용당국으로부터 관련 부서나 조직에 통보된다. 따라서 그들은 범법 선박이나 범법 당사자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조업・생산품・부산물에 대한 어획・구매・판매・수송・가공・저장 또는 수출을 위한 항해활동에 대한 어떤 증명이나 면허 발급을 금하게 된다.

제 61 조 법률위반에 책임이 있는 선박 운영자나 소유자는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며, 제51조 및 유사규정에 정한 처벌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불법행위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제 62 조 선박운영자에 대한 법이 정한 처벌 외에 아르헨티나 국적의 범법선박에 대하여는, 적용당국이 선장의 책임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사에 대한 사본을 해안경비대에 제출한다. 선장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1. 경고
2. 1천 페소에서 10만 페소까지의 벌금
3. 2년까지의 항해면허 정지
4. 항해면허의 취소

제 63 조 적용당국은 회사나 기업에서 1명 이상의 이사, 경영자, 지배인, 감사, 또는 대리인이 그들의 법 제41조에 의한 등록이 (본 법이나 관련 규정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후에, 처벌이 항소 중에 있지 아니한 한)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동 회사나 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정해진 시한 내에 회사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그들의 등록은 삭제된다.

제 64 조 개인이나 회사가 등록이 취소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본 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회사나 기업의 대표자, 경영자 또는 지배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에이전트로도 활동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처벌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5 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처벌의 결과로서 정해진 범법사실에 대한 벌금은 통지 후 10 근무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납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민절차규정”의 제1장(Chapter 1) 주제1(Title 1) 제3항(Book 3)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다.
적용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의 분쟁 및 행정사건 연방 항소부”에 항소권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납부의 부족은 부채확인서의 발급으로 이어진다. 본 부채확인서의 수정은 “시민절차규정”의 제4부(Section 4) 제2장(Chapter 2) 주제3(Title 3) 제3항(Book 3)의 세금부채의 절차에 따른다.

제 14 장 임시 및 경과 조치

제 66 조 조업활동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 당국은 해안경비대와 협조하여 활동이 없거나 버려진 선박을 다른 항구나 항구의 특정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서 정상적인 항만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용은 선박소유주가 부담한다. 억류나 일시적 운항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의 경우, 관련 판사는 정상적인 항만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박의 이동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 67 조 본 법은 아르헨티나가 조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적용된다.

제 68 조 행정부는 본 법 시행 후 90 근무일 이내에 본 법의 적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69 조 연안지방주는 본 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본 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0 조 적용당국은 본 법 시행 후 60 근무일 이내에 지방연안주를 연방수산위원회에 참여토록 소집한다.

제 71 조 본 법 시행 후 90 근무일 이내에 적용당국은 기존의 조업면허를 가진 모든 선박의 재등록을 실시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 180일 동안 운영하지 아니한 선박에 주어진 허가는 적용당국 및 연방수산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그들의 법적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재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기존의 면허선박은 인정되며 동 선박은 본 등록의 규정에 종속된다.

제 72 조 다음의 법률을 폐지된다. 법 제17,094호의 제 4조, 법 제21,673호의 제6조 제1항 및 제8조, 법 제22,260호의 제2조, 법 제17,500호, 제18,502호, 제19,001호, 제20,136호, 제20,489호, 제21,514호, 제22,018호, 제22,017호 및 동 법과 배치되는 다른 법률의 모든 다른 부분.

제 73 조 적용당국은 책임 있는 조직과 함께 수산활동에 관계되는 수산요원, 과학 및 기술요원의 훈련에 관여하고 항구도시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간설립에 관여한다.
또한 적용당국은 수산자원의 어획・양식・가공분야에 있어, 교육기관・노동조합・상공회의소와 연합하여, 필요한 조치・프로그램・노동훈련 과정 또는 별 활동을 촉진한다.

제 74 조 본 법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부과와 관련된 조치 및 경과규정은 5년간 유효하다. 시효기간은 위반일자로부터 계산된다.

제 75 조 (본 법의) 본문은 행정부와 협의되어야 한다. 끝

13. 남미자원협력센터 23개주 출장 내역

	기 간	지 역	주요 업무	출장자
1	2006.5.1-2	◦ SantACruz주 -Rio Galle해 -Rio Grande	주정부 농축수산 관련 인사 및 Fomicruz 광업회사 사장 면담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깔데론 연구원
2	2006.5.3-5	◦ Tierra del Fuego주 -Ushuaia -Rio Grande	주정부 농축림, 광업, 에너지 및 특별관세지역 위원장 면담 -원양어선 San Arawa Ⅱ 견학 -양식 실험장 및 비닐하우스 방문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깔데론 연구원
3	2006.6.5	◦ Neuquén -Plaza Huincul	주정부 농축림, 환경,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Plaza Huincul 석유 화학단지 견학 (2개의 석유 정제회사) -ENSI 중수생산공장 기술 부장 면담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4	2006.6.6-7	◦ Mendoza 주 -Mendoza	주정부 농축림, 환경, 에너지 및 광어 관련자 면담. -포도주 제조 공장, 마늘 수출 공장 견학 -국립포도주 연구소 방문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2006.8.29-31	◦ Mendoza 주 -Mendoza	Argentina Mining 2006 -남미 광업 세미나 및 박람회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깔데론 연구원
5	2006.6.8-9	◦ San Juan 주 -San Juan -Ullùn	주정부 농축림, 환경,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EPSE 에너지 공사 부사장 면담. -포도주제조 공장 및 신선 포도 수출 공장 견학 -Caracoles댐 공사장 견학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6	2006.6.26	◦ Jujuy 주 -S.S.de Jujuy	주정부 농축림, 환경,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Salinas Grandes 소금광산 견학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기 간	지 역	주요 업무	출장자
7	2006.2.27-28	◦ Salta 주-Salta -San Antonio de Cobres	주정부 농축산,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San Antonio de Cobres 견학 (동광산 폐광)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8	2006.2.29-31	◦ Catamarca주 -Catamarca -Paso de San Francisco	주정부 농축림, 환경, 관광, 통상,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칠레와 연결되는 Bioceanic Corridor Paso de San Francisco 견학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9	2006.7.12-14	◦ La Pampa -Santa Rosa	주정부 농축, 에너지 및 광업 관련자 면담. -Salinas Grandes 견학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10	2006.7.6	◦ Buenos Aires주 -La Plata	주정부 농업 관련자 면담.	추종연 소장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2006.8.23	◦ Buenos Aires주 -La Plata	주정부 수산 관련자 면담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11	2006.7.17-18	◦ Santa Fe주 -Santa Fe	주정부 농업 관련자 면담 -축산 소 사육 목장 견학 (비육 및 feeldlot 생산)	전근석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12	2006.9.1-2	◦ San Luis 주 -San Luis -Villa Mercedez	주정부 농축림, 통상, 상공 관련자 면담. -공업단지 시찰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13	2006.9.28-30	◦ Cordoba 주 -Cordoba	주정부 공업 차관 면담 -바이오디젤 공장 견학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14	2006.9.19	◦ Tucuman 주 -Tucuman	주정부 광업, 농업, 축산, 임업 관련자 면담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15	2006.9.20-22	◦ Santiago del Estero -Santiago del Estero -Matara	주정부 농업 및 광업 관련자 면담 -Llajta Mauca 국유지 방문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16	2006.10.3-4	◦ Chubut 주 -Rawson -Trelew	주정부 광업, 공업, 농업, 축산, 임업, 통상, 상공, 에너지 관련자 면담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기 간	지 역	주요 업무	출장자
17	2006.10.5-6	◦Rio Negro 주 -Rio Negro	주정부 광업, 공업, 농업, 축산, 입업, 통상, 상공, 에너지 관련자 면담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18	2006.10.9-10	◦La Rioja 주 -La Rioja	주정부 광업, 공업, 농업, 축산, 통상, 상공, 에너지 관련자 면담	전근석 부소장 김선정 연구원
19	2006.10.9	◦Fprmpsa 주 -Fprmpsa	주정부 농축산, 임업 관련자 면담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20	2006.10.10-11	◦Chaco 주 -Resistencia	주정부 경제 개발 및 국제 협력 담당자 면담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21	2006.10.12-13	◦Corrientes 주 -Corrientes	주정부 생산 및 국제 협력 담당자 면담	장재동 부소장 깔데론 연구원
22	2006.10.17-19	◦Entre Rios 주 -Parana	주정부 농축산, 통상, 상공, 에너지 관련자 면담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
23	2006.10.20-21	◦Misiones 주 -Misiones	주정부 농업, 임업, 수산, 양식, 통상, 상공, 에너지 관련자 면담	추종연 소장 김선정 연구원